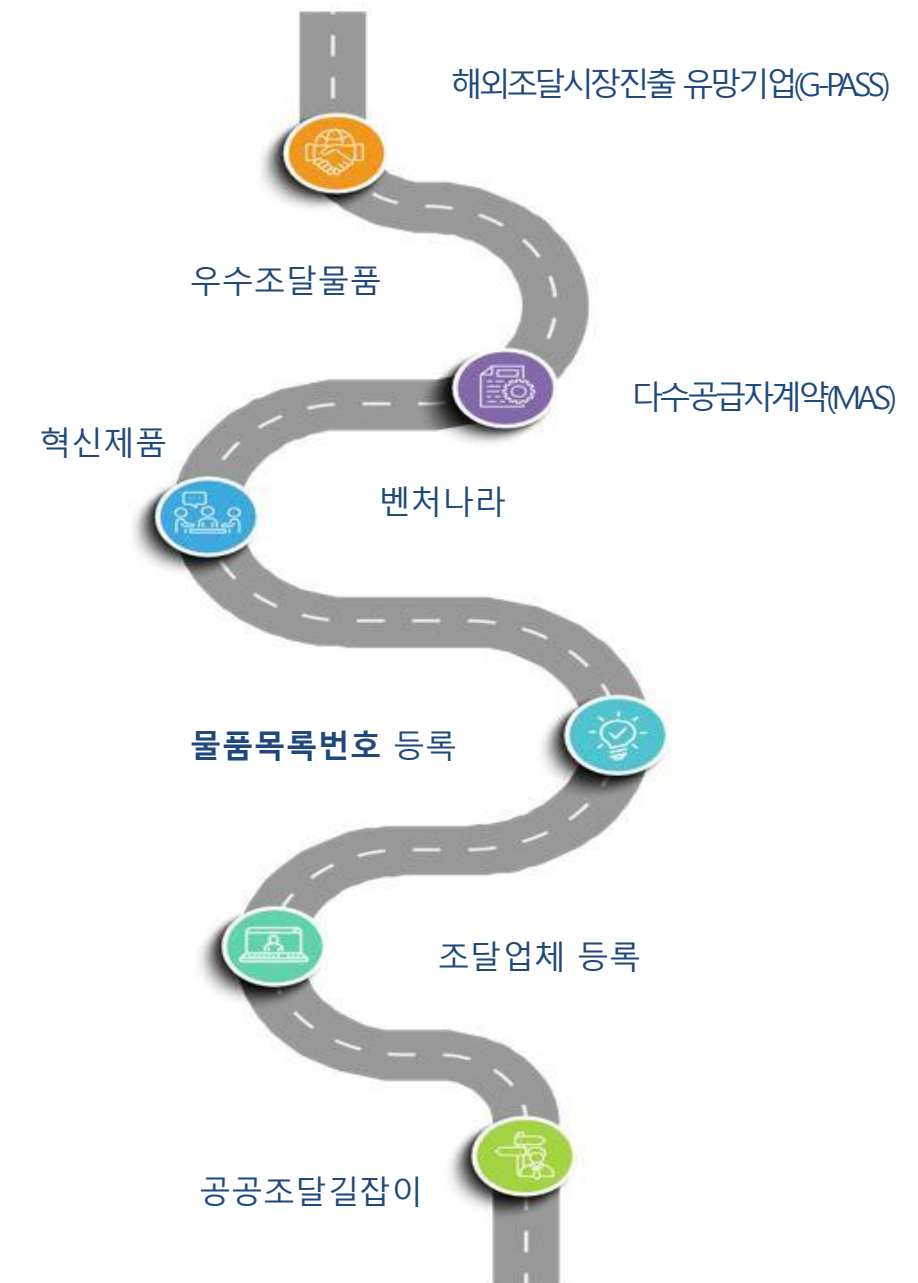


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조달분야는?

공공조달길잡이 조달제도 교육



목 차

1. 공공조달길잡이
2. 조달업체 등록
3. 물품목록번호 등록
4. 벤처나라
5. 혁신제품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7. 우수조달물품
8.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(G-PASS)

Chapter 1

공공조달길잡이

1. 공공조달길잡이

| 도입배경

- ① 창업·벤처·혁신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판매처를 찾지 못해 조달청 여러 부서를 헤매다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례 발생
- ②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·도약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길잡이 도입
- ③ 2024년 3월 본청과 전국 11개 지방청에 조달 경험이 풍부한 직원 34명을 '공공조달 길잡이'로 지정·배치하고,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 시작

* 2025.3월 물품목록제도 2명을 추가하여 현재 36명 지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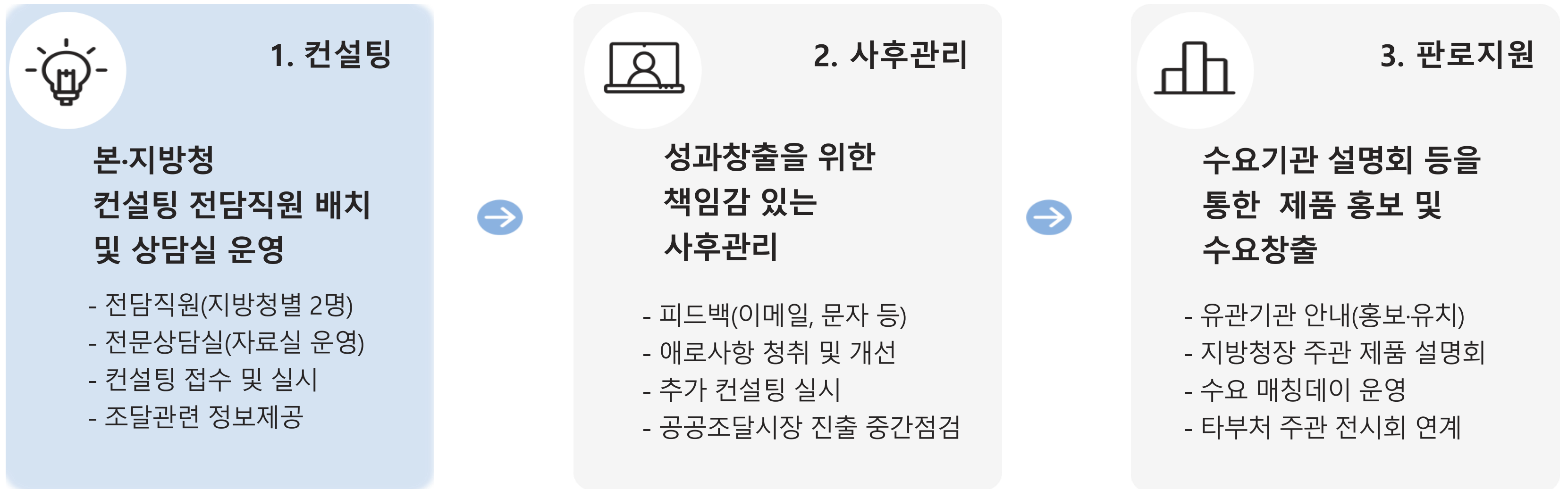
1. 공공조달길잡이

| 공공조달길잡이란?

- 01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하는 기업을 적극발굴하여 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*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조달 전문관

* 벤처 → 혁신 → MAS → 우수 →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G-PASS)

- 02 공공조달길잡이가 하는 일



1. 공공조달길잡이

| 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려면?

01 조달청 홈페이지

조달청 홈페이지(www.pps.go.kr → '공공조달길잡이') → 상담예약신청 → 상담예약하기 → 본인인증 → 필수 입력항목 입력 및 컨설팅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첨부 → 신청 → 지방청 길잡이와 일정 협의 → **방문·전화·화상(ZOOM)** 컨설팅 실시



컨설팅 신청

02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

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중앙회, 테크노파크,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* 홈페이지 20개에 게시된 '공공조달길잡이 배너' 클릭

* 중소기업부, 중소기업중앙회, 한국여성경제인협회,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,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, 서울테크노파크, 경기테크노파크, 대전테크노파크, (사)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, (사)정부조달마스협회, (사)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, (사)정부조달컴퓨터협회, (사)벤처기업협회, (재)한국조달연구원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한국여성벤처협회, 도로교통공사, 비즈인포, 한국벤처투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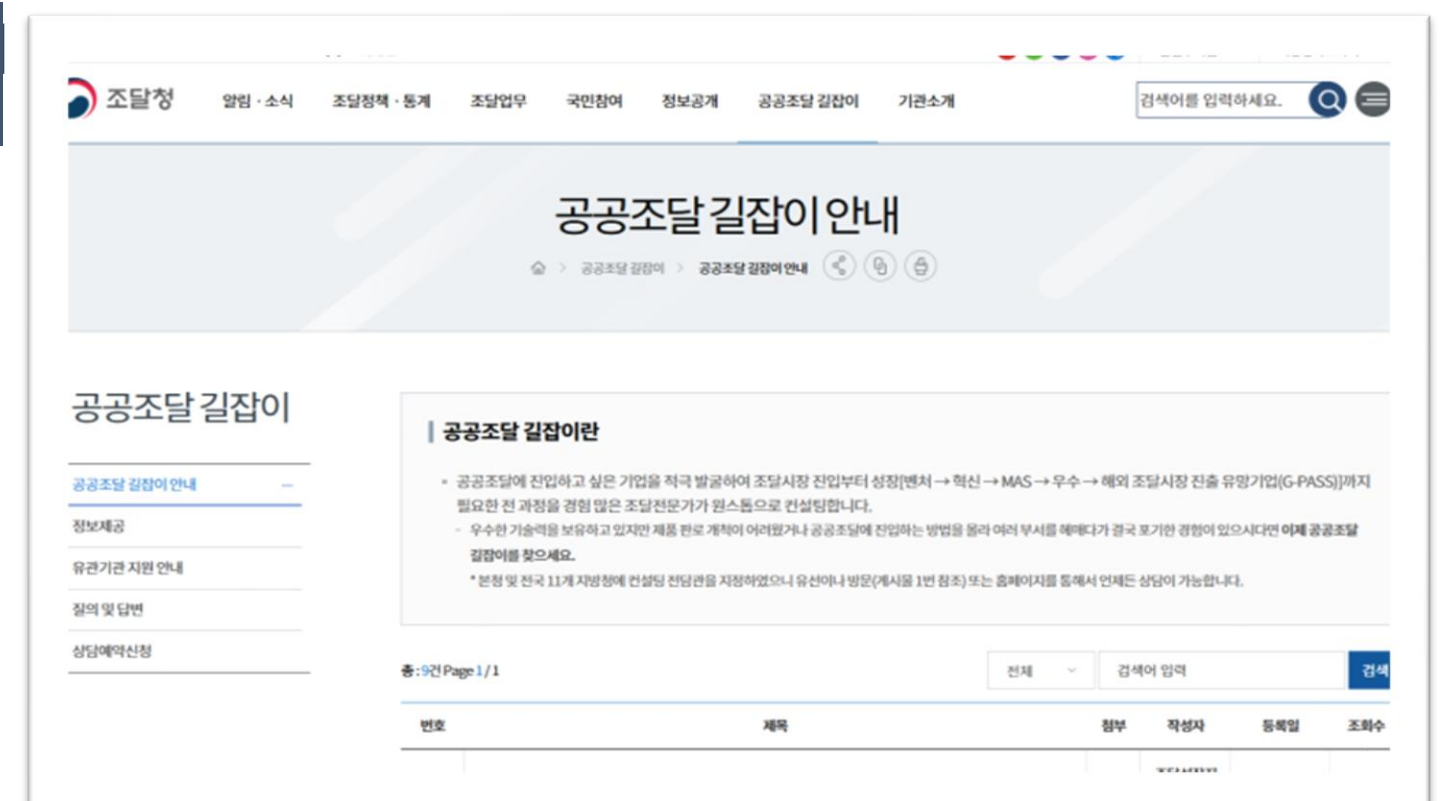
1. 공공조달길잡이

| 홈페이지 이용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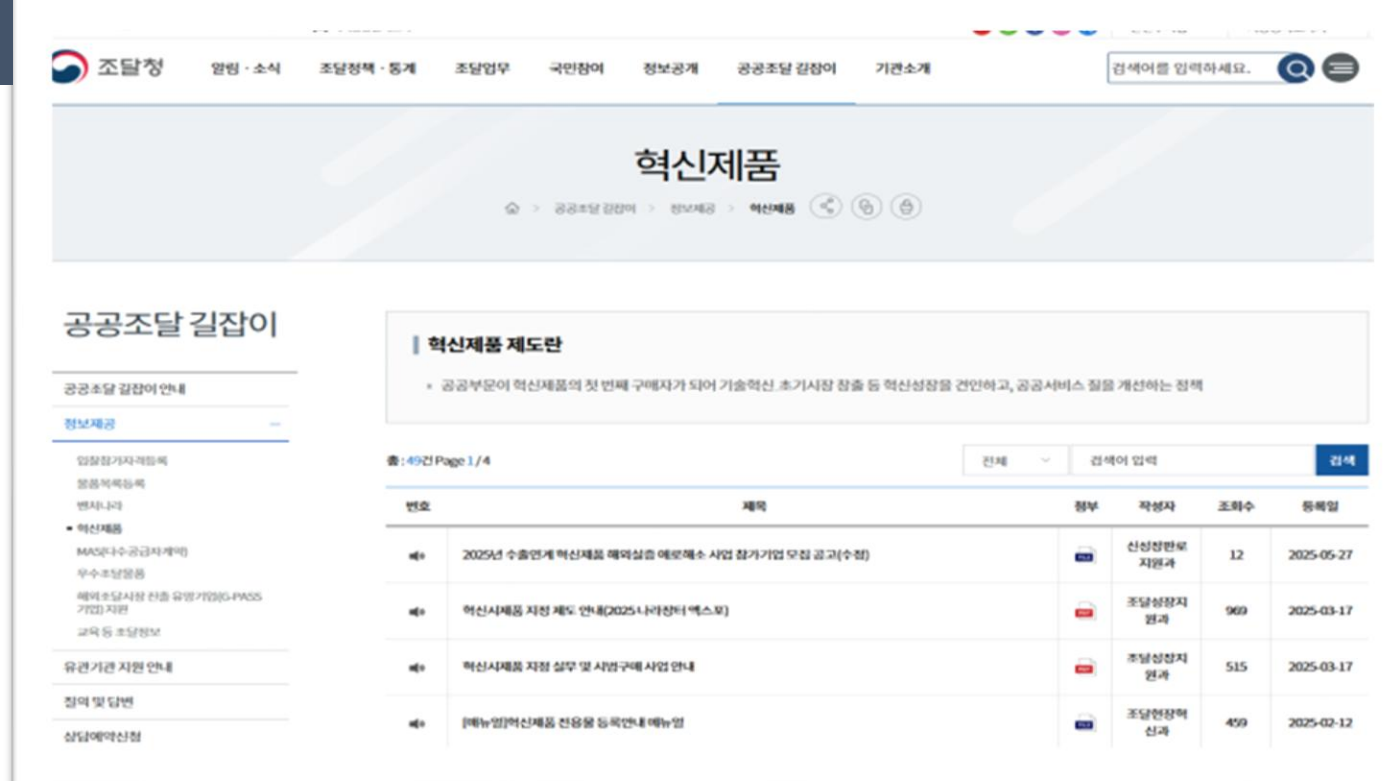
홈페이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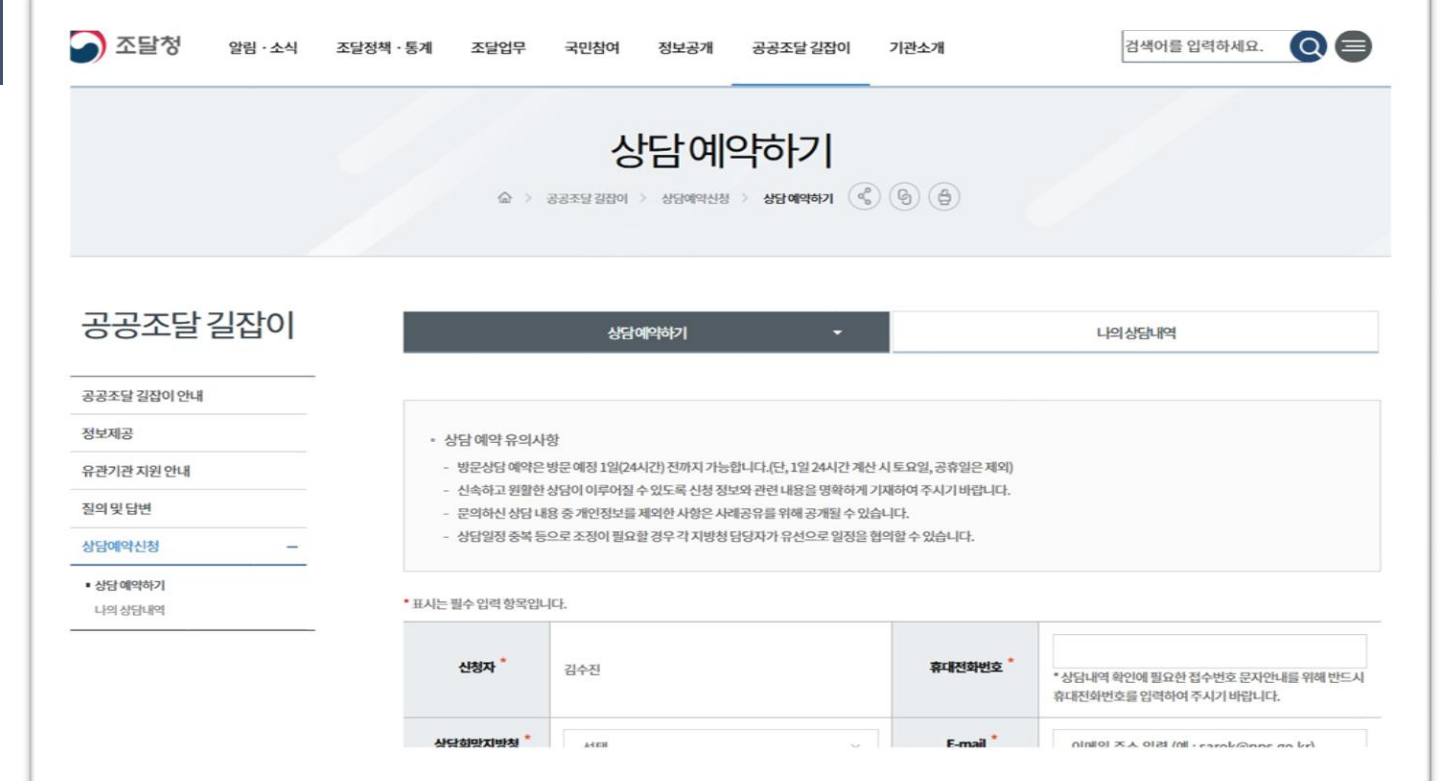
길잡이 안내



정보제공



상담예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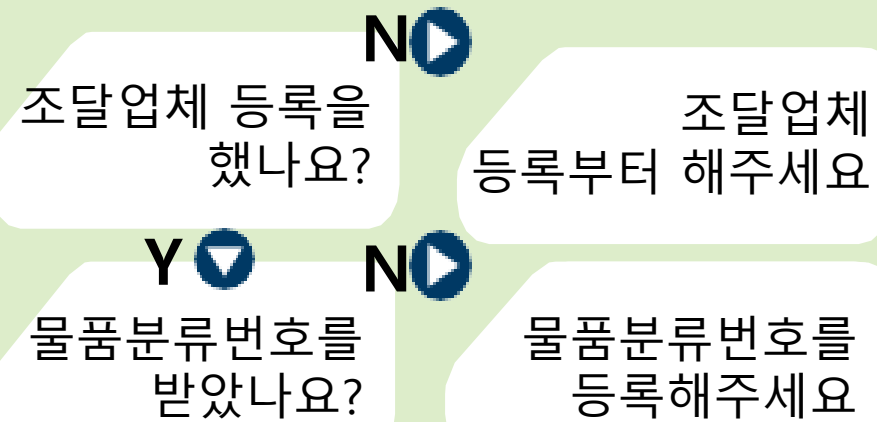


1. 공공조달길잡이

| 우리 기업에 맞는 조달분야 찾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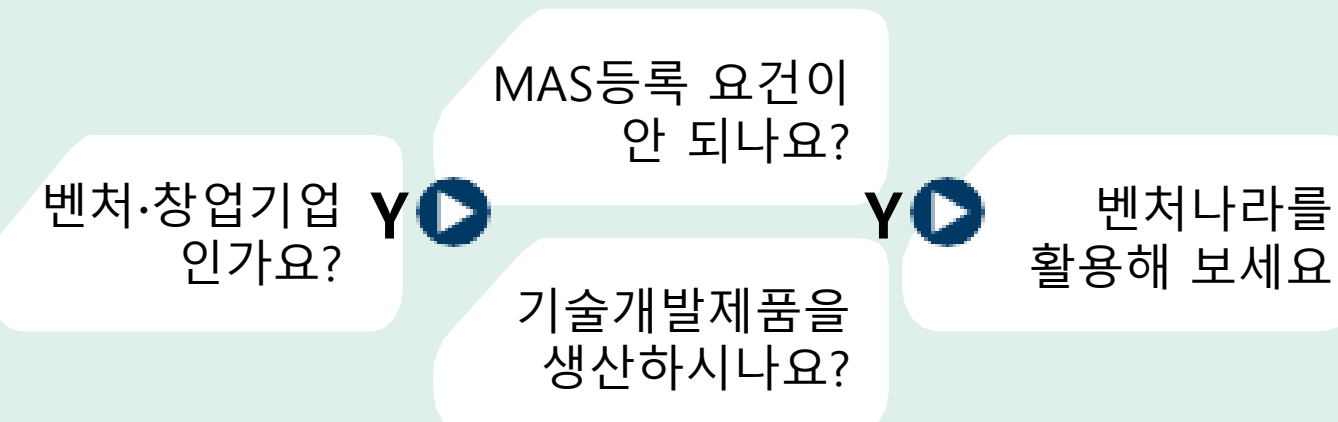
01

준비
단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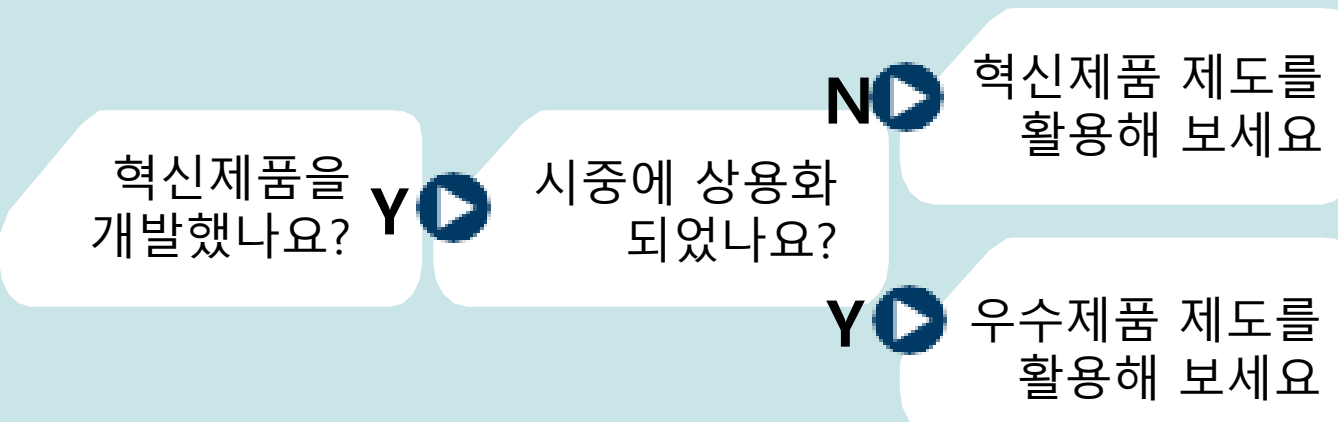
02

벤처
나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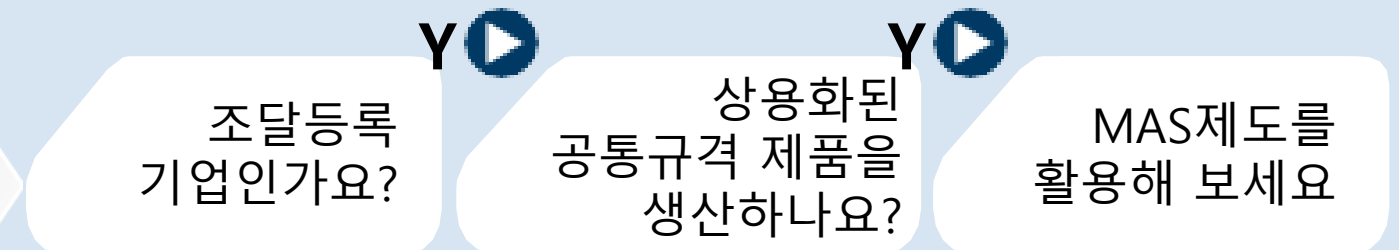
03

혁신
제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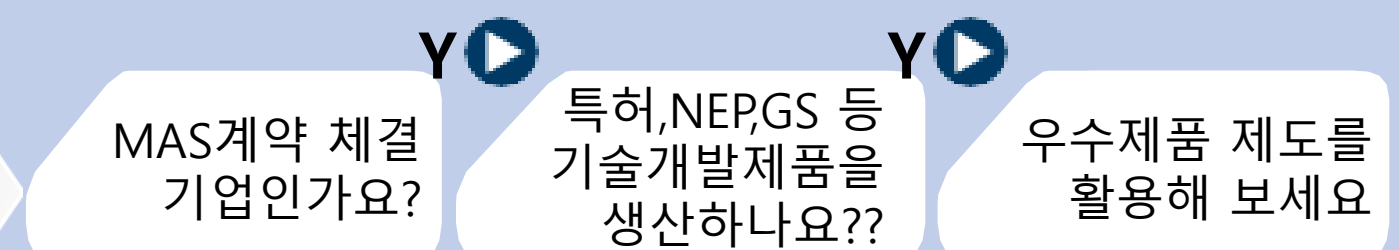
04

MA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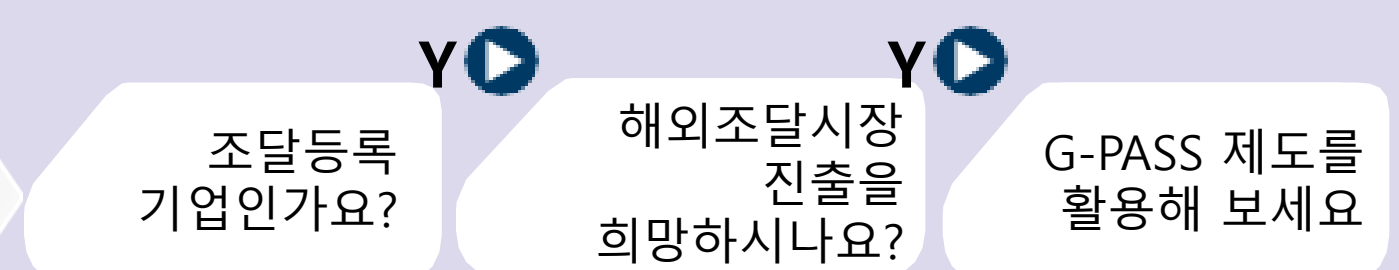
05

우수
제품



06

G-PASS



Chapter 2

조달업체 등록

2. 조달업체 등록

|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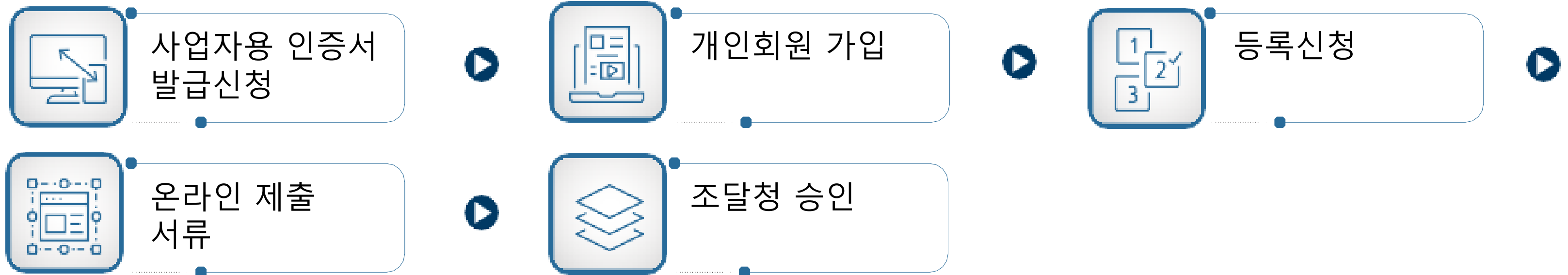
01 조달업체 등록 절차

- (의미) 나라장터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참가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격분야를 나라장터에 등재하는 것
- (대상) 공공입찰 참가를 통해 수요기관에 물품·공사·용역을 공급하려는 사업자
- (등록 분야) 물품(제조/공급), 공사, 용역, 외자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
- 「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」(조달청 고시)

- 「물품구매(제조)입찰유의서」(계약예규)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(조달청 고시)

02 조달업체 등록 절차



2. 조달업체 등록

| 등록 절차

❶ [1단계]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발급 신청

인증서 종류	인증기관	비고
공동인증기관	한국전자인증 www.crosscert.com : 1566-0566 코스콤 www.signkorea.com : 1577-7337 한국정보인증 www.signgate.com : 1577-8787 한국무역정보통신 www.tradesign.net : 1688-2370	유료
사업자용 금융인증서*	금융결제원	무료
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*	IBK기업은행, 카카오뱅크	한시적 무료

* 사업자용 금융인증서와 개인사업자용 간편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

❷ [2단계] 개인회원 가입

- 개인회원 등록(본인 명의 휴대전화 필요)
- 이용자등록 → 신규이용자등록 → 회원가입 → 이용약관 동의(필수, 선택) → 계속 진행(클릭) →
- 본인확인 후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메일 등을 입력 후 저장

2. 조달업체 등록

| 등록 절차

③ [3단계]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

- 로그인 → 이용자관리 → 조달업체등록 →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→ 이용약관 동의 → 계속 진행(클릭)

*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, 고유식별정보수집에 관한 확인,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 : 동의합니다(클릭)

- 등록분야(공급물품, 제조물품, 공사, 용역 등)별 신청 업체의 정보 입력
- 정보 입력 후, 신청업체 인증서로 확인(전자서명) 후 등록 신청(송신)

*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자서명 시 간편인증 방식과 공동인증 방식 중 선택

④ [4단계]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

-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→ 첨부파일 추가 → 전송

⑤ [5단계] 조달청 승인

- 담당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및 서류 확인 → 이상 없는 경우 승인 처리

☎ 문의 : 정부조달콜센터(대표) 1588-0800, (일반) 042-610-1200

Chapter 3

물품목록번호 등록

3. 물품목록번호 등록

| 제도 개요

01 물품목록등록 제도

- (의미)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체계적으로 분류·식별하여 제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관련된 정보를 목록화하여 관리
- (대상) 조달등록 기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물품·서비스 등을 "물품목록번호"로 등록해야 함

-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 - 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(조달청 훈령)
- 「목록화 지침」(조달청 훈령)

02 물품목록등록번호 물품분류번호 + 물품식별번호

- (물품분류번호) 물품을 기능, 용도, 성질에 따라 대, 중, 소,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기는 공통 분류체계, 광의로 볼 때 세부품명도 포함
 - * 국제표준인 「유엔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(UNSPSC)」를 기반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운용
- (물품식별번호) 물품을 생산자와 모델에 따라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로, 그 물품의 이름을 '품목명'이라 함
 - * 품목명은 세부품명(LED경관조명기구), 제조업체명(00전기), 모델명(AB60C), 대표속성값(15W)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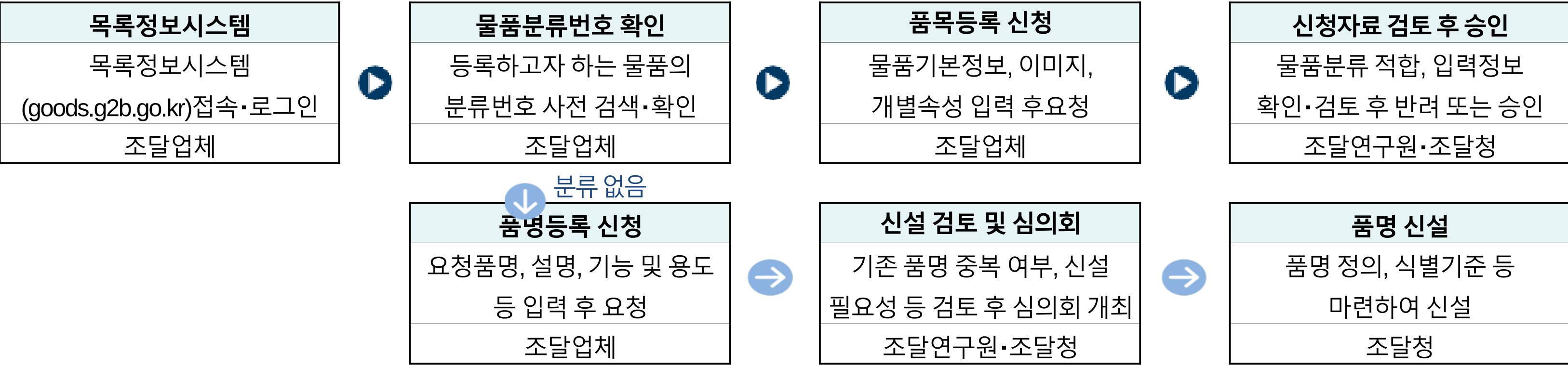
물품목록번호	[공통] 물품분류번호(8자리)				세부품명 (2자리)	[고유]물품식별번호(8자리)
	품명					품목
계층구조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	세세분류	품목 고유번호
분류명	전기시스템조명,부품,액세서리및보조용품	조명기구및액세서리	옥외조명및설비	경관조명	LED경관 조명기구	LED경관조명기구, 제조사, 모델명, 15W
번호	39	11	16	05	01	25504282

3. 물품목록번호 등록

| 등록 절차

03 물품목록등록번호 등록 절차

- 1 (신청) 목록정보시스템(goods.g2b.go.kr)에서 물품목록번호 신청
- * 사전에 신청하는 물품의 세부품명 단위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(조달등록팀, 각 지방청 고객지원센터)  조달업체 등록편 참고
- 2 (검토) 물품분류 적합성, 세부 정보 등 확인(조달연구원)
- * 목록정보시스템 하단 물품품명별 “담당자 연락처” 참고 (대표번호 ☎ 042-472-8234, 042-710-4175, 4181, 4178)
- 3 (승인) 주요 검토사항 확인 및 물품목록번호 발급(조달청)



3. 물품목록번호 등록

| 주의 사항

< 품목(식별번호) 등록 신청 보완 사례 >

- 공급자가 품목등록 요청하면서 제조업체명에 공급자를 기재 → 생산자로 기재
- 모델명에 한글, 띄어쓰기, 특수문자 및 콤마를 사용 → 모델명은 영문, 숫자 및 '-'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(ex. Cr-15B)
- 기존 등록된 모델명과 중복 → 같은 모델명 사용 불가
- * 단,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, 포장단위가 다르고 품목명에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
- 이미지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작게 입력된 경우 → 이미지는 등록물품이 화면 중앙에 오고 크고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
- 앞뒷면 이미지, 여러 가지 색상의 이미지 등 복수제품이 포함된 이미지 사용 → 대표이미지는 제품 하나만 찍은 이미지, 기타 이미지는 다면이미지로 등록
- 다른 모델에 동일한 이미지 사용, 타 업체 이미지 사용 등 → 제조사 모델에 맞는 정확한 이미지 사용
- 개별속성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 → 정확한 물품목록정보 관리를 위해 개별속성은 필수 입력항목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한 충실히 기재(80% 이상)
- 개별속성 측정단위 입력시 영문과 특수문자 혼동 사용 → 측정단위로 기입하는 영문자 또는 기호는 컴퓨터 자판을 사용하되 자판에 없는 경우 특수문자 입력
- 이미 물품식별번호가 있는 물품의 품목을 중복 요청 → 하나의제품은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, 사전에 기존 등록번호 존재 여부 확인 필요

< 품명(분류번호) 등록 보완 사례 >

- 신설하려는 품명이 기존 분류 품명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 → 사전에 품명 검색으로 등록품명이 있는지 확인 후 요청
- 특정 규격·모델의 제품에 대한 품명등록 요청 → 품목등록 메뉴에서 요청
- 요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설명이 부족 → 신설될 분류의 기능, 용도, 정의,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 카탈로그, 규격서, 도면 등의
- 자료를 제출하고 품명신설 필요성과 기존 품명과의 차이점, 관련 규정, 참고 웹사이트 주소, 주요 사용기관 등 참고할 내용을 기재

Chapter 4

벤처나라

4. 벤처나라

| 제도 개요

01 벤처나라 제도

- (의미) 벤처·창업기업이 생산·공급한 상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하여 관련기관의 추천과 조달청의 심사를 거쳐 조달청장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는 상품으로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

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

•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(조달청 고시)

- (대상) 중소기업자 중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(OEM)*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*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

▶ 벤처기업 :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

▶ 창업기업 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라 창업 후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(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)

- (지정기간) 지정일로부터 6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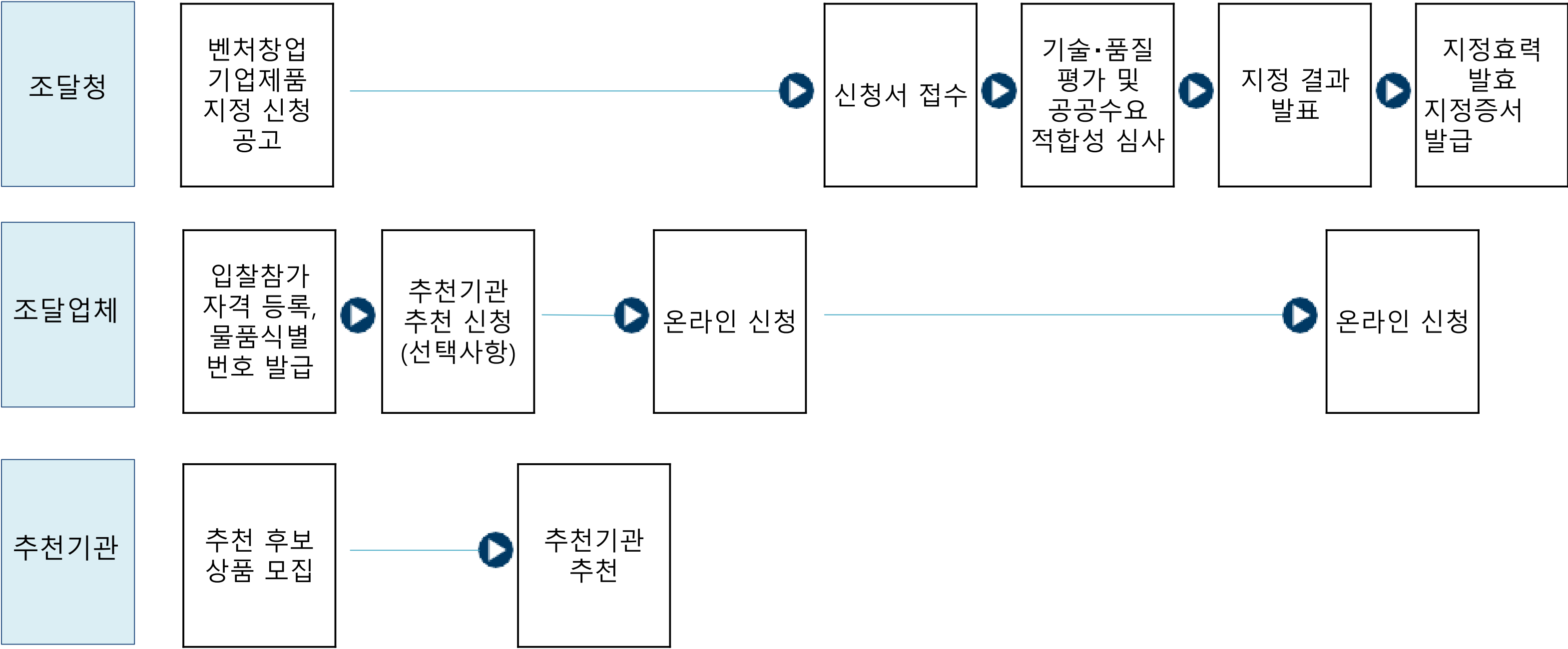
< 지정 제외 대상 >

- 휴·폐업, 부도,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
- **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의 상품**
- 음·식료품류, 동·식물류, 농·수산물류, 무기·총포·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및 의약품(농약),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상품
-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

4. 벤처나라

| 지정 신청 절차

02 지정 신청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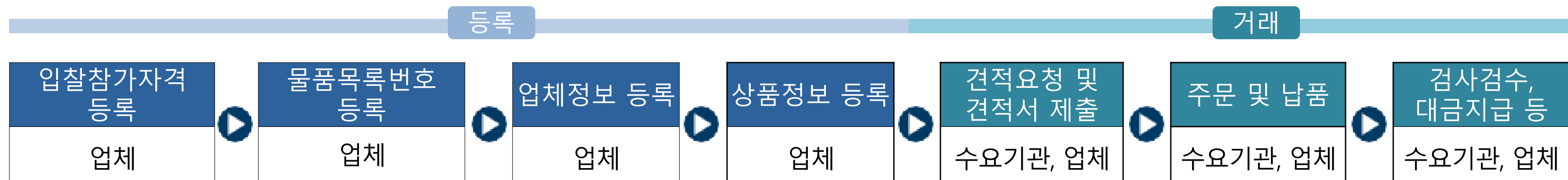
4. 벤처나라

| 지정 혜택

03 지정 혜택

- 조달청 최종 심사 결과 **벤처·창업기업제품**으로 지정된 경우 **벤처나라 등록**
 - 벤처창업기업제품 **지정증서**(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), **인증마크 제공**(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)
 - 벤처나라 **홍보 카탈로그 제작·배포***, 온오프라인 홍보, 상품 동영상 제공 등
- * 홍보 카탈로그 제작·배포는 매년 예산사정,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,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이 대상 업체 자체 선별
- **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**
 -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**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**
 - G-PASS기업 지정 시 **벤처나라 등록 기업 신인도 가점 5점 부여**
 - SGI서울보증의 **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 원의 무담보 보증보험** 제공

04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



Chapter 5

혁신제품

5. 혁신제품

| 제도 개요

01 혁신제품 제도

- (의미)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및 초기시장 창출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
- (체계) 기재부가 제도 총괄, 조달청*을 포함 산업부·중기부 등 16개 부처가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범정부 운영체계 구축

* 조달청은 각 부처 지정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, 혁신장터(플랫폼) 운영 및 조달(수의)계약 대행서비스 등 혁신제품 확산에 중추적 역할 수행

구분	절 차	구분	절 차
❶ 유형 I (각 부처*)	• 부처 R&D결과물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제품 • 부처별 자체기술인증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제품	❷ 유형 II (조달청)	•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제품

* 과기부, 행안부, 농식품부, 산업부, 복지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, 산림청, 특허청, 해경청, 소방청, 경찰청, 기상청(15개)

- (지정) 공공서비스 개선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에 대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

5. 혁신제품

| 제도 개요

02 혁신시제품[유형II] 지정 제도

- (의미)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(또는 제품+서비스) 중 공공성,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(공공수요발굴위원회*)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(시)제품으로 지정

*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(공공수요발굴위원회와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)를 둠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-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(조달청 고시)

- (지정 분야) 공급자 제안형, 수요자 제안형, 민간전문가(스카우터) 추천형

1 공급자 제안형 : 1가지 분야 중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(중복신청금지)

분 야	상세항목
혁신성장지원	①미래형 모빌리티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농어업 ⑧로봇 ⑨인공지능(AI) ⑩조선·해양 ⑪디지털 신기술(콘텐츠·ICT)
국민생활문제	①안전 ②환경 ③건강 ④복지 ⑤교육 ⑥문화 ⑦전기차 화재
미래대비	①저출생 ②고령화 ③양육·돌봄 ④탄소중립 ⑤순환경제 ⑥기후변화 대응* ⑦사회적약자 지원 * '기후변화 대응'은 폭염·폭우·혹한 등 기후문제 해결솔루션

5. 혁신제품

| 제도 개요

② 수요자 제안형

- **수요자 제안형** : 수요기관·기업·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혁신조달로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과제를 공모하여 최종 과제를 선정하고, 이를 해결할 수 있는 '문제해결 제품' 공모
- **공공수요 숙성지원(인큐베이팅)** : 수요기관·기업·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혁신조달로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컨설팅하여 구체화하는 제도
- **민간전문가(스카우터) 추천형** : 기술·금융·기업·창업 전문가(스카우터)* 가 현장에서 직접 혁신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추천

* (스카우터)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,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

③ 혁신시제품[유형Ⅱ] 신청 대상

- 제안 분야 해결 가능 시제품을 가진 업체로 ① 개발완성수준(TRL) 7~9단계에 이르는 ② 상용화 이전의 혁신솔루션(제품, 제품+서비스)으로 시범사용(최대 1년)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
- *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(원칙), 단,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 (벤처나라 등록제품은 2년 이내까지 허용)

5. 혁신제품

| 지정 절차

④ 지정요건 :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

- 특허(등록 후 7년 이내) 또는 등록실용신안(등록 후 3년 이내)이 적용된 제품,
- 신제품(NEP) 인증(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) 받은 제품,
- 신기술(NET)(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)이 적용된 제품

* 권리보유 면제

(소재·부품·장비 분야)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핵심전략기술 적용 제품

(수요기관, 일반국민 제안공모 선정 과제) 국민생활 밀접, 긴급한 수요 및 공급 부족 등 해결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한 제품으로서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제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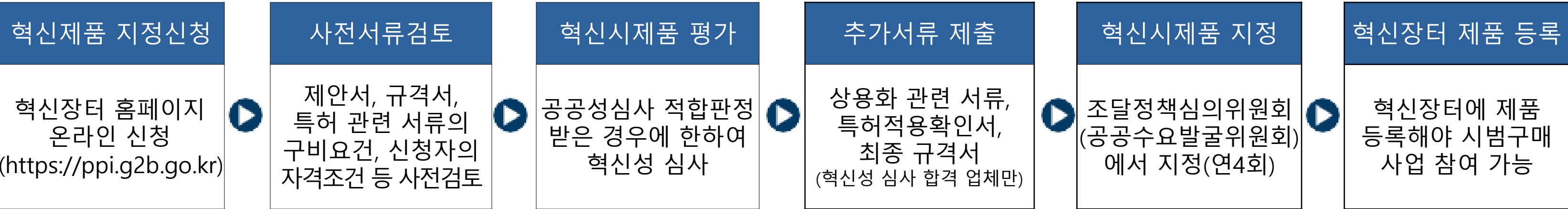
< 심사 및 지정 제외 대상 >

-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
- 휴·폐업, 부도,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
-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(물품식별번호 동일)인 경우
- 신청제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거나, 해당 업체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(물품식별번호 동일)인 경우
- 동일 제품(물품식별번호 동일)으로 4회 이상 혁신시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

5. 혁신제품

| 지정 절차

05 지정절차



신청	- 신청 양식 : 혁신장터 → 혁신시제품 지정 → (업체)지정신청 공고 → 공고서 제목 클릭 → 첨부파일의 별첨 1(제안서), 별첨 2(규격서) 등 다운로드 '26년도 신청기간 (공급자제안형) 3.3.~3.20.(2차), 5.26.~6.12.(3차), 8.31.~9.18.(4차) (수요자제안형) 연중 상시 (민간전문가추천형) 연 3회 ※ '차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계획 공고'는 혁신장터 공지사항에 연말 게시 예정
평가	1차 : 공공성 심사 (모든 항목에서 심사위원 2/3이상 적합 판정 시 통과) 2차 : 혁신성 심사 (종합점수 70 이상이면 통과)

☎ 문의 :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(070-4056-7420, 7217), 혁신제품 길잡이(070-4056-6316, 7664) / 혁신제품지원센터(02-796-8234, www.kipcc.re.kr)

5. 혁신제품

| 지정 절차

06 지정기간

- 지정·고시된 날로부터 3년*, 기간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3년(①1차 연장 1년, ②2차 연장 2년) 범위에서 연장 가능
 - ▶ 1차 연장(1년) : 공공기관 납품실적 있을 경우 인정, 혁신제품 공공기관 표창·기관 구매확약 등도 허용
 - ▶ 2차 연장(2년) : 1차 연장 기업 대상으로 유사기술 여부와 기술탁월성 평가
- * 다만,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(실용신안)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(임시허가, 실증특례)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, 이 경우 지정 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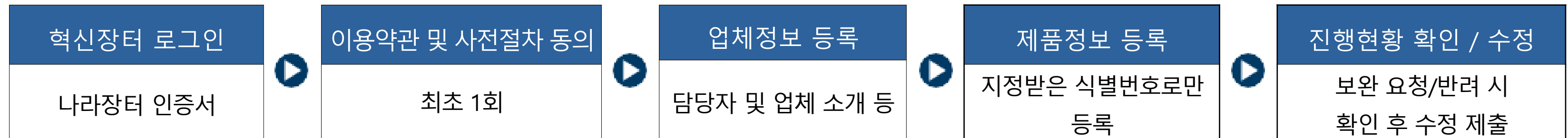
07 지정혜택

- '혁신장터'(혁신제품 전용몰)등록 및 최대 6년(기본 3년, 연장 3년)간 **수의계약 가능**
- 조달청 예산으로 **시범구매** 계약체결하여 초기 판로 지원('26년 839억원)
- 혁신제품 **구매목표비율** 및 **기관평가** 달성 가능
 - * (목표) '25년 약 8천억원, (기관평가) 중앙 1%, 지자체 1.5%, 공공기관 1.7%, 지방공기업 1% 구매목표 달성을 평가
- **수출선도형 시범구매**로 수출 지원
-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, 조달의 날 전시회 등을 통해 마케팅과 홍보 지원
- 구매담당자의 **구매면책** 제도적 장치로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 지원
 - * 각 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구매면책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
5. 혁신제품

| 지정 혜택

08 혁신장터 상품 등록



- (추정가격 1억 원 미만)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가능
- (추정가격 1억 원 이상) 수요기관 자체 수의계약 또는 중앙조달 요청 가능

* 추정가격 :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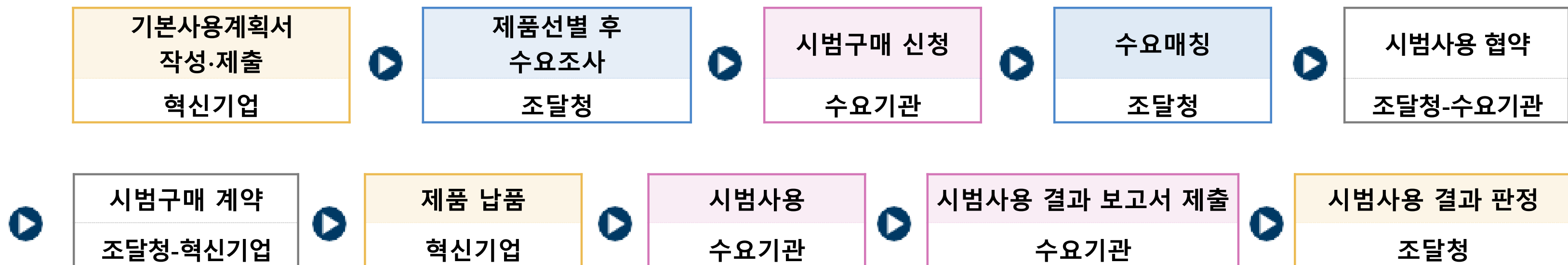
※ 혁신제품 중 단가계약(우수제품 및 다수공급자(MAS) 계약 포함) 제품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를 통해 구매

5. 혁신제품

| 지정 혜택

09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

- **(개념)**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('26년 839억원)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, 시범사용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·피드백하는 사업
- **(목적)**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구매,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하여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 촉진



※ 테스트 결과 성공판정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 시 특례* 부여

* (기준)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→ (특례)평가위원 2/3 찬성 시 합격

Chapter 6

다수공급자계약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| 제도 개요

01 다수공급자계약(MAS) 제도

- (의미)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, 성능,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·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
- (나라장터 종합쇼핑몰) 공공기관이 공통·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편리하게 선택·구매하는 공공조달 온라인 쇼핑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다수공급자계약)
-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」(조달청 공고)
- 「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」(조달청 고시)

-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」(조달청 훈령)
-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」(조달청 고시)

02 대상 품목

-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
- 품질,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동등 이상으로 경쟁이 가능한 수요물자
-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수요물자
 - ▶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 사 이상일 것
 - ▶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| 계약 체결 절차

03 계약체결 절차



<광고검색>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shop.g2b.go.kr) → 구매광고 → 더보기 → 광고구분에 'MAS'체크 → 해당 세부품명 입력 후 검색

☎ 신규계약 등 제품관련 문의 :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품명별 담당자(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참고)

제도 관련 문의 : 조달청 구매총괄과(070-4056-7273, 7471), 다수공급자계약 길잡이 (070-4056-7266, 7293)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I 계약 체결 절차

① 구매공고

- (공고내용) 계약기간, 인도조건, 제출서류(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, 가격자료, 규격서, 시험성적서 등), 관련 규정 등
 - 입찰참가자격 : 중소기업자, 국내 제조(직접생산)업체, 관련 면허 또는 인증 등
 - 공통상용규격, 시험기준, 업체별 계약 규격 수 등 별도 명시
- (공고기간) 10년 원칙(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공고기간 조정 가능)
- (차기공고) 구매입찰공고 종료일 기준 6개월 전에 차기공고 게시

② 적격성 평가

-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적격자로 선정
 - 결격사유 : 신용평가등급 B- 미만, 부도 또는 파산상태인 업체
(단, 창업 3년 이내의 제조(물품) 또는 서비스(용역)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등급 면제)
 - 신용평가등급 :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되,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평가등급 적용(사전자격심사에도 동일 적용)
- 적격성평가 서류 제출(종합쇼핑몰지원센터)
 - 적격성평가 신청서, 자기평가 및 심사표, 신용평가등급확인서,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,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 제출
 -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(사이버강의) 의무 수강 후 적격성평가 신청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| 계약 체결 절차

③ 사전심사

- (대상품명) 14개 세부품명
 - 체육시설탄성포장재,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, 미끄럼방지포장재, 도막형바닥재, 철제가드레일, 철 제 도 로 중 앙 분 리 대 , 철제교량난간,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, 알루미늄제교량난간, 낙석방지책, 차선분리대, 흙콘크리트,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,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
 - 국민 안전,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품질관리가 중요한 품명에 대해 사전자격심사 적용
- (평가항목) 납품실적, 기술능력, 경영상태, 품질관리, 사후관리, 신인도
- (선정기준) 1차년도 공고 (65점 이상), 2차년도 이후 공고 (70점 이상)
- (결격사유) 입찰참가자격 미충족, 신용평가등급 B- 미만 또는 부도·파산상태인 업체
-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(사이버강의) 의무 수강 후 사전자격심사 신청

④ 협상품목 승인

-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품목의 규격서 등 자료를 나라장터로 제출
 - 협상대상 배제 품목 : 시험기준 미달, 공통상용규격과 상이, 업체별 계약규격수 초과(단, 공고서에 별도 명시한 경우), 특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, 경쟁성립 불가 물품
 - 신규물품 납품실적 증빙자료 : 공고서에서 신규 계약 품목에 대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 증빙자료 제출(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 제출)
- * 단,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제조 품목,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,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은 납품실적 제출 예외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I 계약 체결 절차

⑤ 가격자료 제출

- 승인받은 협상품목의 최근 1년간 규격별 가격자료 제출(원칙)
 - 가격자료 제출서, 가격 총괄표, 규격별 거래내역, 가격 증빙자료
(세금계산서, 계약서, 거래명세표, 매출원장 등의 사본, 원가계산서 등)
- * 수요물자의 수명주기, 거래빈도 등 감안하여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서에 별도 기준 명시

⑥ 협상기준가격 결정

- 규격(모델)별 가중평균가격,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(원칙)
-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거래(구매)실례가격, 원가계산가격, 업체제시가격, 유사 거래(구매) 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음

⑦ 가격협상

-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규격(모델)별로 가격협상(원칙)
- 가격제안서에 2단계경쟁 대상 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
 - 단, 규격(모델)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할인율 제시
- * (할인율 변경) 당초 계약(수정계약)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가능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I 계약 체결 절차

⑧ 계약체결 및 조합쇼핑몰 등록

- (계약기간) 계약체결일 기준 3년 원칙(단, 구매공고 종료일 이내)
- (종합쇼핑몰 등록 기준) 세부품명기준 3인 이상(단,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)이 되는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
 - 종합쇼핑몰 등록 후 3인 이상 ⇒ 2인만 남는 경우 등록 유지(1인만 남는 경우 판매 중지)
- *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또는 거래정지로 인해 귀책없는 계약상대자가 1인이 된 경우 판매재개 허용

⑨ 계약관리

- (계약단가 조정) 물가변동에 따라 단가 조정
 - 가계약단가를 인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함
 - 계약상대자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인하 가능
- (우대가격 유지 의무) MAS가격이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
 - 위반 시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계약단가 인하, 거래정지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
- * 시장거래가격 : 계약상대자가 직접 계약·판매한 가격, 총판공급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| 2단계 경쟁

04 2단계경쟁 제도

- (의미) 수요기관에서 **일정금액 이상 구매**하는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의 **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**를 위해 품질, 가격 등을 비교, 검토 하여 구매

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

- (적용대상)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**5억 원 이상인 경우**
- (선정방법)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및 수량을 공고하고,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 업체 선정
- (평가기준) **종합평가방식, 표준평가방식(Ⅰ~Ⅱ)** 중 수요기관이 선택

* 평가방법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: 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」 [별첨 2]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



* 제안요청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(종합쇼핑몰)에서 On-Line으로 시행

6. 다수공급자계약(MAS)

| 2단계 경쟁

②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

- (적용대상)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**5천만 원 이상인 경우**
 - * 2단계경쟁 의무적용금액 : 대기업제품은 5천만 원 이상, 중소기업 제조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 원 이상
- (선정방법)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**5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** 제안요청하고, 가격제안서를 받아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 선정
- (평가기준) 종합평가방식, 표준평가방식(Ⅰ~Ⅱ) 중 수요기관이 선택



* 제안공고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(종합쇼핑몰)에서 On-Line으로 시행

Chapter 7

우수조달물품

7. 우수조달물품

| 제도 개요

01 우수조달물품 제도

- (의미)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한 기술력과 품질,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

* 우수조달물품은 우선구매 (공공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% ↑) 제품에 해당 (판로지원법 제13조)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, 제32조
- 「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 규정」(조달청 고시)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

02 신청대상 :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*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

- 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을 포함한 제품(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
- 신기술(NET 등)이 적용된 제품(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)
-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(등록 후 7년(특허), 3년(실용신안) 이내)
- 저작권등록이 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(GS)
- 연구개발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(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)

* 초기 중견기업 :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만료 후 3년 이내 또는 3년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(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제2항)

7. 우수조달물품

| 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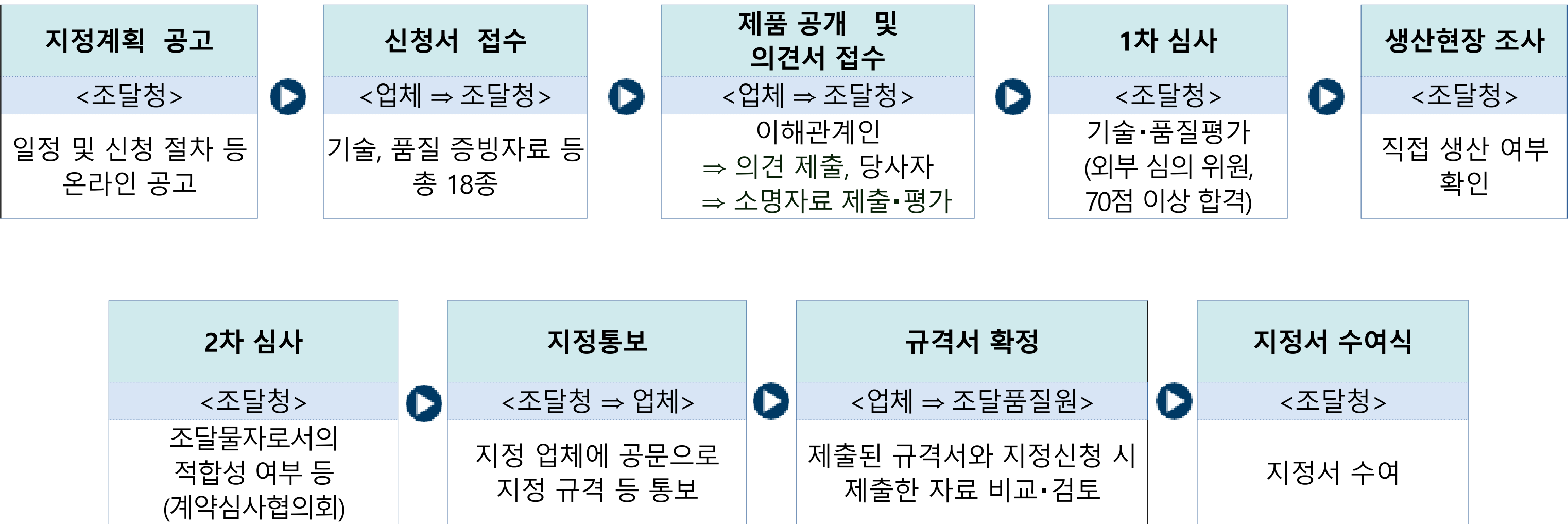
< 심사 및 지정 제외 대상 >

- 신청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
-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,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
-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-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·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
- 동일 세부품명번호(10자리) 기준 4회 이상 1차 심사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
-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(단,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된 경우 제외)
- 이동 또는 설치·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
- 음·식료품류, 동·식물류, 무기·총포·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, 의약품, 농약 등
- 제품규격서 상의 '주요자재소요량'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%를 초과한 제품
(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결정 가능)
-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
-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
-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(심사위원의 인식여부 불문)

7. 우수조달물품

| 지정 절차

03 지정 절차



- * 지정신청은 신청기간(지정계획 공고 참조) 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서류제출
- * 규격 추가(상시접수, 지정심사 기간 내 심사), 기간연장(상시접수, 매월말 심사)

☎ 문의 :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·우수제품 길잡이(070-4056-7295, 7144),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(02-521-0014)

7. 우수조달물품

| 지정 기간

④ 지정기간 : **지정일*로부터 3년**,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* 지정일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, 90일, 120일, 150일,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

■ 지정기간 연장 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 연장, 중복으로 충족하는 경우 기간 합산하여 연장 가능

-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(신규 지정기업에 한하여 인정) : 1년
- 수출실적이 우수제품 공공조달실적 대비 3% 이상 또는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 대비 30% 이상인 경우 : 1년
- 전체 고용인원(지정일 기준) 대비 청년고용 증가인원이 3%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% 이상인 소기업 및 4% 이상인 중기업 : 1년
- 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%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%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(별지 제3호의5서식)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% 이상이 정규직인 경우 : 1년
- 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5% 이상인 경우(단, 신규지정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% 이상인 우) : 1년
-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 : 1년

※ 연장사유가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 가능,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일 사유로 다시 지정기간 연장 불가

7. 우수조달물품

| 지정 혜택

05 지정혜택

- 기본지정 기간(3년) 및 기간 연장(최대 3년)을 통해 **최대 6년간 수의계약**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
 - *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 '우수조달물품 인증몰'에 등록
- 전시회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, 마케팅 및 홍보 지원
- 보증기관과 은행권의 보증금율 감면 및 보증심사 우대 지원과 환율 우대, 외국환 수수료 감면 (기술보증기금, 기업은행, 산업은행 등)

Chapter 8

G-PASS

8. G-PASS

| 제도 개요

01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G-PASS) 지정 제도

- (의미) 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,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G-PASS기업)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

* G-PASS(**G**overnment **P**erformance **A**ssured) 기업 :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,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·중견업체



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

• 「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·관리규정」(조달청 고시)

02 신청자격

-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·중견기업

* 국내조달 실적 또는 수출실적이 없어도 G-PASS기업 신규지정 신청 가능

03 지정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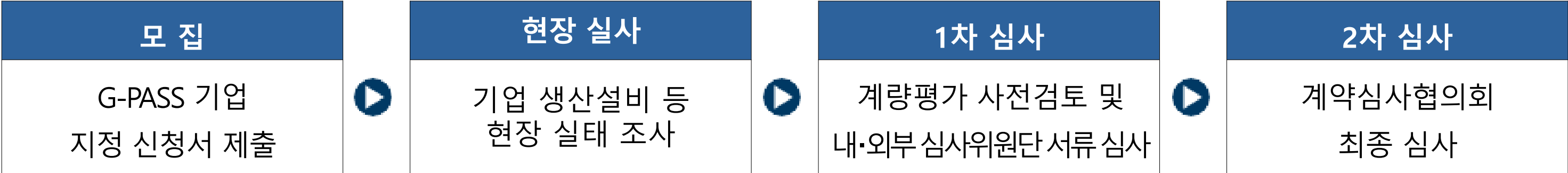
- 지정일로부터 5년

(단, 기업이 신청할 경우 수출실적, 해외조달시장 진출사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재지정 가능)

8. G-PASS

| 지정 절차

04 지정절차



※ G-PASS기업 지정심사는 분기별 1회(3월, 6월, 9월, 12월) 진행되므로 지정 목표로 하는 분기의 첫 달(1월, 4월, 7월, 10월)까지 서류 제출 및 보완 완료

☎ 서류 제출 및 문의 : (사)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(G-PASS협회)(contact@gpass.or.kr, 02-6203-7732, 7748, 7727)
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(070-4056-7590, 6443) /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(G-PASS) 길잡이 (070-4056-6492, 6487)

05 지정 혜택

- **(해외전시회 참가지원)**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, 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, 정부조달 수출 컨소시엄 참가 기회 제공
- **(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)** 나라장터엑스포,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상담기회 제공
- **(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)** 해외 현지기업과 1:1 매칭 상담회, 전략기업 육성사업, 전문인력 양성과정,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 등 제공

8. G-PASS

| 지정 혜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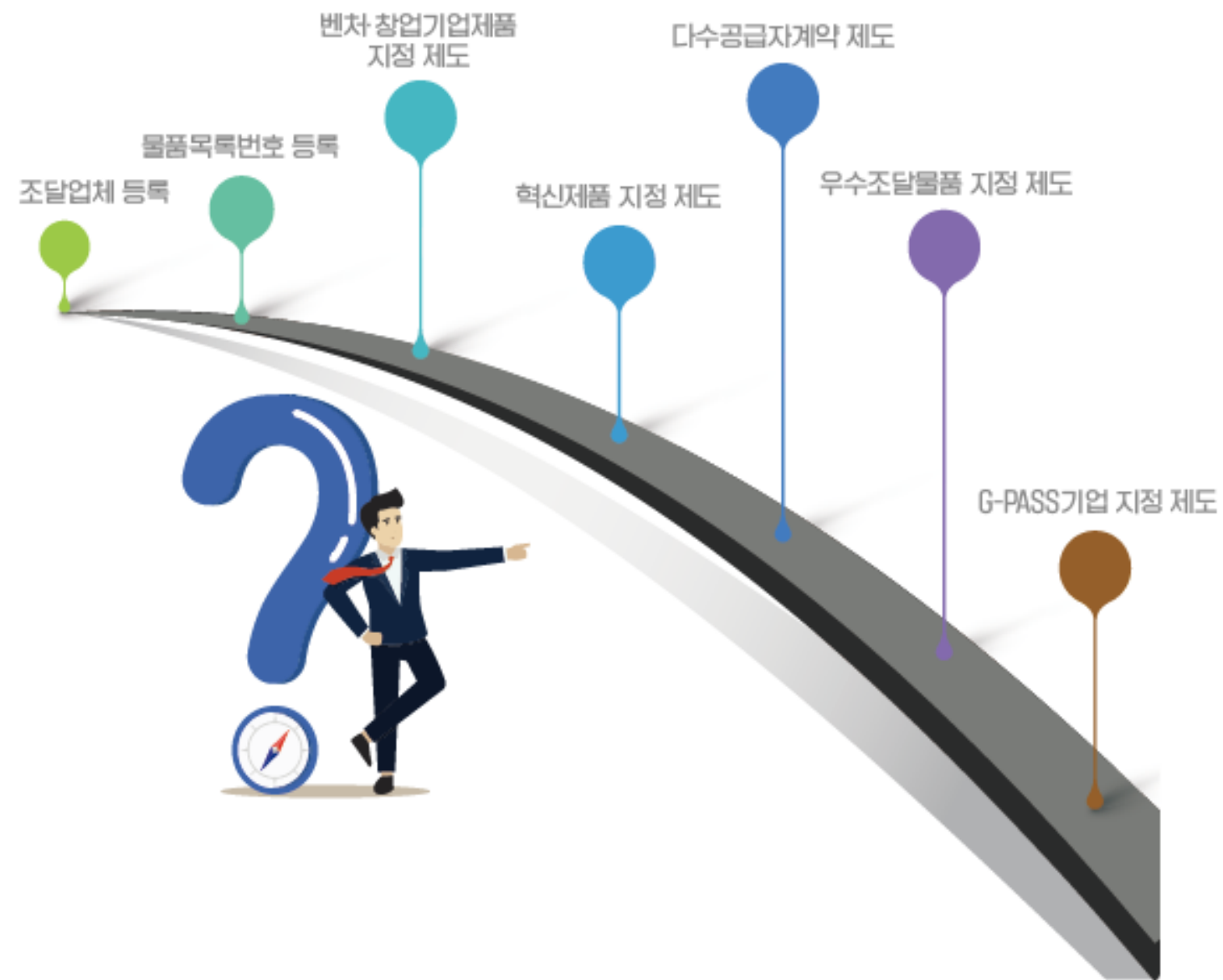
- (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 / A, B등급만 해당)

- ▶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(1점)
- ▶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 “정책지원” 신인도 가점(1점)
- ▶ 물품·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우대(최대 +7.5점)
- ▶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평가 우대(최대 +5점)

- (유관기관 지원사업 혜택)

- ▶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(2점)
- ▶ 기술보증기금 : 보증심사 우대 및 기술보증수수료 인하
- ▶ 기업은행 : 환율우대 및 외국환 수수료 일부감면, 지원사업 연계 등
- ▶ 산업은행 :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및 해외송금수수료 일부 감면 등
- ▶ 한국수출입은행 :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 선정 우대 등
- ▶ 무역보험공사 : 보증한도 우대,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등

- (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에 G-PASS기업마크 부착 / A, B등급만 해당)



어느 조달시장에 진출해야할지
정하셨나요?

진입부터 성장까지 !
공공조달길잡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